

수출검사감면 운영요령 중 개정고시 안내

공업진흥청 고시 제89-275호
 수출검사감면 운영요령(공업진흥청 고시 제86-1131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9. 6. 20
 공업진흥청장

다 음

제2조 제1항 중 제1호, 제7호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의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외 무역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할 때.
7. 다음 각호의 해외 유명규격을 획득하여 해당규격을 표시한 물품을 수출할 때. 다만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규격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CSA, JIS, BSI, BEAB, CB, UL, IECQ, VDE, IWS, ST
8.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1등급 사정 상품을 수출할 때.

다만, 외국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등급표시를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등급사정 상품 제품 검사기준에 의한 자체검사 성적서로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9. 전문시험 검사기관의 Q마크 표시 상품을 수출할 때.
 다만, 외국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Q마크 표시를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품질보증 검사기준에 의한 자체검사 성적서로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조 제2항 중 제2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직접 또는 외국과의 합작으로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5. 연간 200만불 이상 수출하는 업체로서 제3호의 단서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과거 1년간 4회이상 검사에서 평균 불합격률이 1% 미만일 때.
6. 봉제완구(직물제 인형, 직물제 동물모형 완구)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과거 1년간 4회이상 검사에서 불합격률이 동제품에 대한 평균 불합격률의 1/2 미만일 때.

제2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수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가 KS 표시품 이거나 품질관리 등급공장의 등급사정상품 또는 가공기술 등급공장에서 가공한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부자재의 이화학 검사를 생략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조 제2항 제3호, 제5호, 제6호에 의한 검사면제 공장은 자체검사 성적서로서 합격증을 갈음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89. 7. 1부터 시행한다.

제3회 아시아 표면처리 포럼 안내

국립공업시험원은 한국금속표면공학회와 공동으로 제3회 아시아표면처리 포럼을 금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본포럼에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약 15개국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기조연설 9편, 논문 65편이 발표될 것이며, 첨단 표면처리전시회도 동시에 개최될 것입니다.

본포럼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업체의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품 품질 인증 현황

한국전기통신공사 품질보증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품품질 인증 업무중 현재 인증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TDX-1및 1A 부품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소로부터 초기 인정부품으로 지정받아 TDX 생산업체에 공급되고 있는 부품중 동품질 보증단에서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부품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지사항

인증번호	인증일자	부 품 명	부 품 번 호		인 증 범 위	부품규격서 번호	제조업체명	주 소	비 고
			공 사	제조업체					
87-045	87. 12. 12	금속피막 고정저항기	DRA144 DRA147	GP 55	0.25W, ± 1%, 50Ω 이상	1301-RES (고정비권선 저항기 규격)	한 주 전 자 (주)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4-27	구 서린전자 (주)
89-006	89. 3. 16	금속화 폴리에스터 필름 커패시터	DCF000	MEU Series	Epoxy type, +10%	1301-CAP (금속화 필름 콘덴서 규격)	고 려 전 기 (주)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71	
89-007	"	금속화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커패시터	DCF000	MUC 2D 155K	"	"	"	"	
89-008	89. 4. 25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	DCA000	SA Series	Miniature type, ±20%	1301-CAP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규격)	삼 화 전 기 (주)	충청북도 청주시 북대동 92	
89-010	89. 4. 24	국부전원 공급장치	COF1 10168	PSA104	-	1301-CSPB	이 화 전 기 공 업(주)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272-20	인증시험신청일 : 88. 12. 30
89-011	"	"	COF101 69	PSA 104 A	-	1301-CSPB-A	"	"	"
89-012	"	"	COF101 70	PSA105	-	1301-CCPB	"	"	"
89-013	"	"	COF101 72	PSA106	-	1301-CMPB	"	"	"
89-014	"	"	COF101 74	PSA108	-	1301-CNPB	"	"	"
89-009	89. 4. 24	금속화 폴리에스터 필름 커패시터	DCF000	BGD Series	Box type, ±10%	1301-CAP (금속화 필름 콘덴서 규격)	대 우 전 자 부 품(주)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승두리 598-26	
89-109	88. 5. 4	다이오드	DDB000 0001 DDE000 0003 DDE0000 0005 DDE000 0007	VR-61D DS4001 DS4004 DS4148	- - - -	Discrete 반도체 규격, Varistor, Rectifier 및 Small Signal Diode.	동 성 물 산 공 업(주)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각평리 342-1	인증정지일자 : 89. 5. 4
89-015	89. 5. 16	국부전원 공급장치	COF101 97	HPK-202	-	1301-SCPБ	화 승 전 자 (주)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926	인증시험신청일 89. 1. 23
89-016	"	"	COF101 98	HPK-203	-	1301-SCPБ-A	"	"	"
89-017	89. 5. 27	MOS IC	DUD102 0003	Z08420 04DSE	-	1301-Z80 PIO	ZILOG	210 Hacienda Ave. Campbe 11CA. U. S. A	신청업체명 : ENC Korea 인증시험신청일 88. 2. 15

공지사항

인증번호	인증일자	부 품 명	부 품 번 호		인증범위	부품규격서 번호	제조업체명	주 소	비 고
			공 사	제조업체					
89-018	89. 6. 13	인쇄회로기판	DBC000 DBD000	"	4 층 6 층	1301-PCB	(주)유니크	인천시 북구 가좌동 178-26	인증시험신청일 89. 1. 17
89-024	89. 6. 26	Flat 케이블	DWB000 0004	UL - 2697	40c	1301-CAB (Flat 케이블 규격)	금 성 전 선 (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55	인증시험신청일 89. 1. 30
89-025	"	"	DWB000 0008	UL - 2651	20c	"	"	"	"
89-026	"	"	DWB000 0009	UL - 2651	34c	"	"	"	"
89-027	"	Round Type Twisted Flat Shield 케이블	DWB000 0005	UL - 20381	7 p	1301-CAB (Round Type Twisted Flat Shield 케이블 규격)	"	"	"
89-028	"	Round Type Twisted Pair 케이블	DWB000 0010	UL - 2935	10p	1301-CAB (Round Type Twisted Pair 케이블 규격)	"	"	"
89-029	"	"	DWB000 0011	UL - 2935	10p	"	"	"	"
89-019	"	동축케이블	DWA000 0001	RG - 196 A/U	-	1301-CAB (동축케이블 규격)	"	"	"
89-020	"	Flat Woven Twisted Pair 케이블	DWB000 0001	UL - 20184	10p	1301-CAB (Flat Woven Twisted Pair 케이블 규격)	"	"	"
89-021	"	"	DWB000 0006	UL - 20184	8 p	"	"	"	"
89-022	"	"	DWB000 0007	UL - 20184	5 p	"	"	"	"
89-023	"	Flat 케이블	DWB000 0002	UL - 2651	50c	1301-CAB (Flat 케이블 규격)	"	"	"
89. 030	89. 7. 5	미니어처 릴레이	DKC000 0002	RA - 5 WM-K	2 T	1301-REL (Miniature Relay, 수은 Relay 규격) 2 T Miniature Relay I	다카미사와 전기(주)	1-1111 Aza-Na- kaniwa, Ooaza- Seto, Saku City Nagano Pref. 38 4-01 Japan	신청업체명 : 에스비 상사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이제 선진산업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실질적인 수입개방정책과 더불어 수입의 급증 또는

과다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 산업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상공부 무역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9. 6. 27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輸入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

1. 輸入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의

輸入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Import Relief)는 특정물품의 공정 또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통한 輸入의 급증 혹은 과도한 輸入으로 인하여 國內産業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經濟活動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거나 혹은 그 우려가 발생할 때 政府가 이에 개입하여 이를 방지 또는 제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國內産業이 輸入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輸入급증이나 막대한 기존의 輸入으로 인하여 유망·유치산업의 육성·발전의 기회가 저해받는 경우나, 구조적 불황산업의 구조조정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 政府가 적절히 개입하여 일정기간 이를 保護·支援해 줌으로써 國內産業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經濟活動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단순한 輸入의 급증 또는 과다로 인한 산업의 피해(Industry Injury)를 구제해주는 公正貿易(Fair Trade)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외국 기업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물품의 輸入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해 주는 불공정무역(Unfair Trade)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요

최근 우리의 經濟는 輸出의 호조에 힘입어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하였고, '86, '87년 계속해서 經常收支의 赤字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경제사정이 좋아짐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로서도 앞으로의 지속적 輸出伸張과 經濟發展을 위해 보다 폭넓게 國內市場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꾸준히 輸入自由化의 확대('88년 95.4%)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輸入自由化의 진전과 더불어 종전과 같은 방식의 일방적, 사전적 輸入管理制度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감으로써, 輸入으로 인한 國內産業에 대한 피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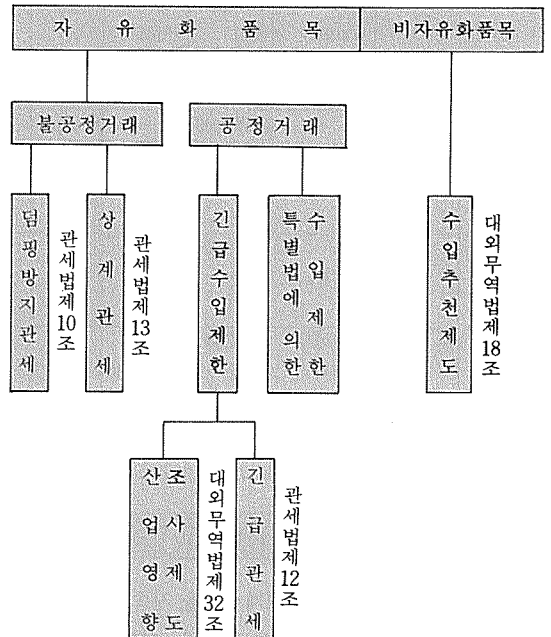
여러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이러한 輸入自由化의 진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國內産業의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며 國內産業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도입·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피해구제 제도는 또한 輸入開放政策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安全瓣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公正貿易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제도로써 기존의 輸出입기별공고, 輸入감시제도 등의 일방적 사전적 輸入관리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對外貿易法의 제정시 산업영향조사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公正하고 國際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公正貿易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不公正貿易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는 이미 國際적으로 그 필요성, 제제수단 및 절차 등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 덤핑 방지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를 GATT 규정 등 國際적인 기준에 어느정도 일치하게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輸入 관리제도〉



3. 公正貿易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

가. 概 要

公正貿易(Fair Trade)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제도는 산업영향조사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外國에서 輸入되는 물품이 덤핑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정상 가격으로 輸入된다 하더라도 國內産業의 생산, 고용, 판매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당사자가 商工部 貿易委員會(KTC)에 제소하여 피해구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나. 申 請

특정한 물품의 급박한 輸入의 증가 또는 과도한 輸入으로 인하여 同種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國內産業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당해 國內産業의 발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企業이나 업종별 단체 또는 산업별 勞動組合은 “輸入에 의한 산업영향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申請書 작성방법에 따라 申請書를 3부 이상 작성 제출하여 산업피해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調 査

○ 調查 개시의 결정

貿易調查官은 신청이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격 유무, 輸入 실적, 國內 산업발전 저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調 査

조사는 貿易調查官室에서 전담합니다. 調查團은 貿易調查官을 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의 公務員, 산업연구원 등의 산업·무역분야의 專門家, 辯護士, 公認會計士 등으로 구성되며, 또한 질문지(Questionnaires)의 송부, 공청회(Public Hearing)의 개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 調查期間

調査는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80일 안에 종결되며, 사실이 복잡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기간을 180일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調查의 중단 또는 중지

調査過程에서 신청자격의 미비, 國內産業發展 저해의 현저한 경미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당해 품목의 주요 輸出者 등이 輸出을 감소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여

수락된 경우 貿易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단·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마. 産業被害判定

産業被害調査가 종결되어 貿易調查官으로부터 조사종결보고서가 貿易委員會에 제출되면, KTC는 당해 國內産業이 輸入으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産業發展阻害 또는 저해우려의 판정은 가격, 생산, 이윤, 고용의 하락, 生産施設의 유향, 재고의 증가, 판매의 감소 등 관련있는 經濟的 要因 및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KTC가 판단합니다.

바. 救濟措置

調査結果에 대한 審議結果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면, 貿易委員會는 輸入수량 및 品質制度, 技術 및 生産性 향상지원, 산업합리화 업종지정 등과 같은 조치를 결정합니다. 商工部長官은 同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貿易委員會(Korean Trade Commission)

KTC는 商工部に 설치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합외제 行政機關의 성격을 지닌 行政委員會로서, 현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學界, 言論界, 法曹界, 官界부터 國際貿易分野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 중 大統領이 임명하되, 委員長은 위원들 중에서 大統領이 지명합니다. 위원의 任期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법률로써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貿易調查官室)

貿易委員會의 사무국으로 貿易調查官室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산업피해 및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조사
- 수입금증 및 수입과다 물품에 대한 수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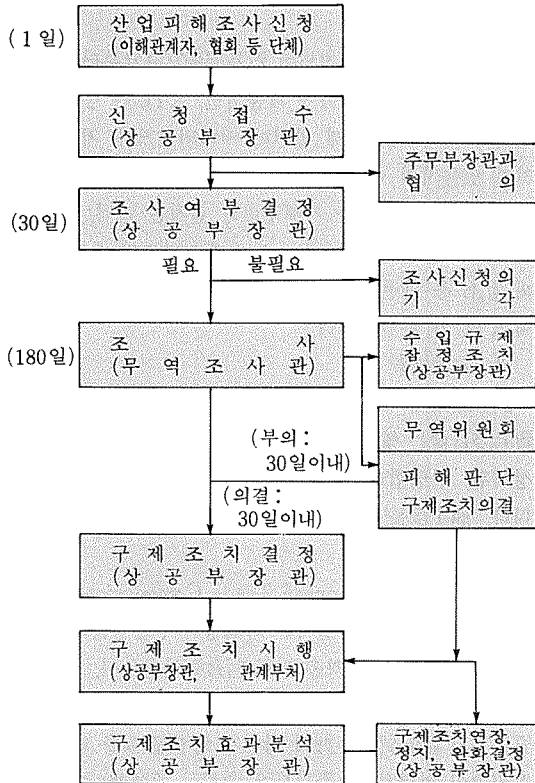
4. 不正貿易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

가. 概 要

不正貿易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는 外國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제품의 輸入으로 인해 國內産業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國內産業 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당해 國內産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財務部長官이 발동하는 덤핑 방지관세와 相計關稅(Anti-dumping

공지사항

〈공정무역에 대한 산업피해조사 및 피해판정 절차〉



*복잡한 경우 180일 이내 조사기간 연장 가능

& Countervailing Duty)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덤핑 관세와 相計關稅는 발동요건이 다를 뿐 그 절차와 적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나. 申 請

덤핑 또는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의 輸入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國內産業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主務部長官이 신청서를 3부 이상 작성 財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 방지관세(相計關稅)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調 査

조사는 關稅審議委員會에서 관장하나 同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調查班을 구성하게 됩니다. 調查班은 덤핑(보조금 지급) 調查班과 산업피해조사반으로 구분·운영되며, 덤핑 調查班 班長은 財務部 公務

員으로 하고 産業被害調查班長은 조사대상물품의 주무부처 소속 公務員으로 하며 調查班員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公務員으로만 구성됩니다. 調查는 조사개시후 1년 이내에 종결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暫定措置

財務部長官은 덤핑(또는 보조금지급) 및 피해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輸出國 또는 輸出者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덤핑 방지관세(또는 相計關稅)를 부과하거나 잠정 덤핑 방지관세의 상당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약속의 수락에 따른 調查의 중지·종결

당해 물품의 輸出者가 덤핑(또는 補助金 支給)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輸出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財務部長官이 이를 수락한 경우 조사를 중지·종결할 수 있습니다.

바. 救濟措置

조사결과 덤핑(補助金 支給) 사실 및 國內産業被害가 인정되는 경우, 財務部長官은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輸出國 또는 輸出者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 가격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 關稅審議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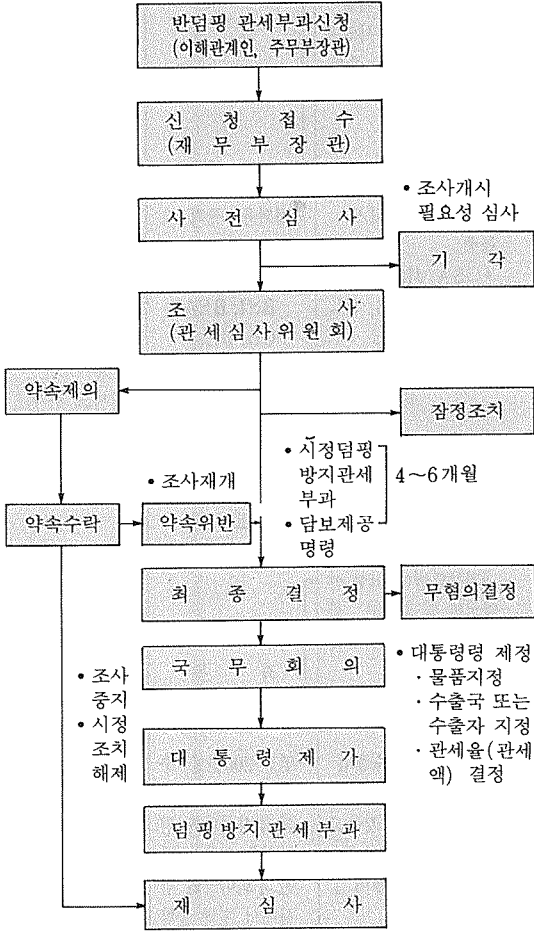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산업피해구제는 財務部 관세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關稅審議委員會는 委員長(財務部 次官)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덤핑 방지관세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및 기타 정책에 관하여 財務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5. 關聯 法規

가. 公正貿易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 대외무역법 제32조 내지 제43조
- 동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78조
- 輸入에 의한 산업영향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상공부고시 제87-22호)
-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반덤핑 관세 · 상계관세 발동절차)



* 이러한 반덤핑 관세 발동절차는 관세법시행령 제 4 조의 13 에 의하여 관련된 용어만 변경하여 상계관세 발동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공부고시 제87-23號)

나. 불공정무역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 관세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6조의 2
- 관세법시행령 제 4 조의 2 내지 제 4 조의 7, 제 4 조의 13 및 제 4 조의 17

수출검사제도 대폭 개선

1989. 6.

工業振興廳長

1. 공업진흥청은 공산품 품질향상에 따라 정부의 감시 규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자체품질보증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원화 절상 등 무역환경변화로 수출이 부진해짐에 따라 수출업계의 부담경비 절감 등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수출검사법에 의해 검사 품목으로 지정된 현행 582개 (HS 10단위) 품목중 307개 품목을 대폭 삭제하고, 검사 품목이라 할 지라도 업체별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면제를 확대하는 등 수출 검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89.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 공업진흥청에 의하면

-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600억 \$대로 성장하였고 대부분 공산품의 품질이 향상되어 대외 신뢰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원화 평가 절상 등 3고현상에 따라 중수 수출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대내외적 수출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출 검사법에 의거 검사를 받고 있는 수출 검사품목을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 조정하여 민간기업의 자체품질보증 기능을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고 '90년 상반기부터는 안전위해상품, 크레임 과다상품 및 수출전략상품 등 최소한의 품목만을 검사한다는 방침 아래 이미 '88년 하반기에 308개 품목을 면제한데 이어
 - 금년에도 품질이 향상되어 대부분 검사가 면제되거나 불량률이 낮은 품목, 수출물량이 줄어 검사실적이 적은 품목, 동종 품목이 대부분 해제되는 품목으로서 대외 성가를 해할 우려가 적은 품목 등은 해제한다는 기본원칙아래 그동안 수출업계에서 제시한 각종 의견과 수출 검사실적 및 세계 각국의 검사실시에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후 수출검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 307개 품목을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 반면 우리나라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신용을 확립하고 건전한 수출무역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량률이 높은 품목 각국에서도 검사하고 있는 안전과 인체유해 관련품목, 세계 일류화를 위한 수출전략상품 등 대외 성가유지 향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당분간 존속시키되 검사시 지도를 병행하여 자율관리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기로 하였다.
3. 이번에 해제되는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공지사항

- 전기제품류에서는 턴테이블, 음성재생기를 갖춘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휴대용은 제외), 데크, 라디오 방송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와 결합된 것, 자동차용, 외부 전원없이 작동되는 것은 제외), 고정축전기, 글로우스타아터, 장식용램프 등

4. 또한 일정 품질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검사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검사대상 품목이라 할지라도 품질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일부 절차를 간소화 하였는데

- 日本의 ST마크 획득상품, 검사기관의 Q마크 표시 상품
- 품질관리 1등급사정 상품에 대해서는 선별 면제에서 전면 면제로 전환하였으며 개별업체의 불합격률이 1%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검사 면제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 아울러 그동안 수출검사 신청시 구비서류로서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였던 E/L 사본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생략하고 수출검사 신청서 하나만으로 검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검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나아가서 공업진흥청에서는 이러한 수출검사 품목 축소와 절차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출검사품목 조정 현황〉

(HS 10 단위)

분 야	현 행	존 속	삭 제	주요삭제 품목
전기전자	32 (19)	18 (12)	△14 (△7)	턴테이블, 카세트용데크, 고정축전기, 글로우스타터, 탁상용 녹음기 및 라디오, 장식용 램프

〈수출검사 면제범위 확대 내용〉

현 행	확 대 대 상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면제대상 -KS 표시허가제품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허가면제물품 		

현 행	확 대 대 상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 산림개발, 용역기타 투자사업을 위한 물품 또는 종사자의 일용품 및 공사용 자재 - 군수물자 - 건본 - 해외유명규격 표시 물품 • CSA, JIS, BSI, BEAB, CB, UL, IECQ, VDE, IWS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유명규격 표시물품 • CSA, JIS, BSI, BEAB, CB, UL, IECQ, VDE, IWS, ST - 품질관리 1등급 사정상품 - 검사기관의 Q마크 표시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마크 추가 • 허가면제에서 자동면제로 전환 • Q마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면제대상 -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및 외국과 합작으로 운영하는 백화점 물품 - 외국인 투자공장 생산 물품 - 연간 200만불 수출업체로서 소정의 검사시설과 검사원을 갖추고 연간 6회이상 검사에서 평균불합격률이 1% 미만일때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00만불 수출업체로서 소정의 검사설비와 검사원을 갖추고 연간 4회이상의 검사에서 평균 불합격률이 1% 미만일때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검사 회수의 삭감격 (6회→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1등급 사정 상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제완구 수출업체로 연간 4회이상 검사에서 평균 불합격률의 1/2 미만일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면제로 전환 • 품질이 일정수준이상인 봉제완구 업체의 검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계의 - 소정의 자격을 지닌 구매자 검사대상·품목 · 섬유류, 신발류, 잡화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하반기 수출촉진 주요사업 및 추진계획 안내

공지사항

지난 6월 30일 상공부 주관으로 개최된 수출점검반 회의와 관련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금년도 하반기 수출촉진 주요 사업 및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9. 7. 3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하반기 수출촉진 주요사업〉

1. 해외시장 개척단 구성 파견

• 본사 주관 : 3회

개척단명	파견시기	파견지역	파견업체
• 유럽 OEM부품 수출 촉진단	4/4분기	서독 등 구주 5개국	전기·전자부품 및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 20~30개 사
• 전기·전자제품 해외 시장 개척단	"	중남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 15개 사 내외
• 대일 수출촉진단	3회(7, 9, 11월)	일본	섬유, 농수산, 소비재 제조업체 30개 사 내외

• 지방사무소 주관 : 4회

개척단명	파견시기	파견지역	파견업체
• 전북지역 자동차상속진단	10월경	동남아	전북지역 중소기업 10개 사 내외
• 대구지역 해외시장개척단	10월경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4개국	대구지역 중소기업 15개 사 내외
• 광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촉진단	4/4분기	동남아	광주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15개 사 내외
• 청주지역 수출촉진단	9월	동남아	청주지역 중소기업 15개 사 내외

2. 중소기업 해외 세일즈 출정 지원 : 1,100회

- 국내 중소기업 해외 세일즈 출정 무역관 현지 지원
 - 바이어와의 사전 상담추진 및 상담지원
 - 현지 시장정보 제공

- 통역지원, 호텔 예약 등

• 지원실적

연도	상반기	연간
1988	1,210	2,440
1989	1,451	
증감(%)	19.9	

3. 전시회 개최 및 참가

가. 전시회 개최 : 6회

전시회명	기간	장소	주최	규모	참가업체
동경 한국상품 종합전시회	8.29~9.2	동경국제 무역센터	KOREA, JETRO, 공동	2,642평	152개사
쿠웨이트 한국상품종합전시회	10.15~10.19	쿠웨이트	KOTRA	500S/M	
한국상품 특별 판촉전 개최	9.22~10.11	일본 긴테쓰 백화점 본점 (오사카) 및 지점(나라, 교토, 와카야마)	KOTRA	연 1,300평	40개사 내외
한·일 부품 종합전 개최	9.4~9.6	KOEX	KOTRA	500S/M	일본의 부품수요업체 10~15개사
한국국제계측기기전 개최	9.5~9.9	KOEX	KOTRA	5,184 S/M	국내 및 해외업체 30개사 내외
한국국제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전	11.3~11.7	KOEX	KOTRA	5,184 S/M	국내 및 해외업체

나. 전시회 참가 : 22회

(1) 종합박람회 참가 : 7회

전시회명	참가기간
이즈밀	8.26~9.10
테헤란	10.3~10.10
산티아고	10.25~11.5
바그다드	11.1~11.15
말레이시아	11.14~11.19
인도	11.15~11.30
나이로비	9.26~10.1

공지사항

(2) 전문박람회 참가: 15회

박람회명	기간
시카고 하드웨어	8. 13~8. 16
시카고 자동차부품	8. 28~8. 31
홍콩 전자부품	8. 31~9. 2
밀라노 가정용품	9. 8~9. 11
벨지움 선물용품	9. 3~9. 7
뮌헨 운동용품	9. 12~9. 15
파리 혁제품	9. 16~9. 19
토론토 선물용품	9. 17~9. 20
싱가폴 기계류	9. 26~9. 30
홍콩 산업	11. 2~11. 5
뒤셀돌프 고무제품	11. 2~11. 9
도쿄 국제문구	11. 9~11. 10
파리 전자부품	11. 13~11. 17
도쿄 가구	11. 22~11. 26
자카르타 종합기계	12. 6~12. 9

4. 해외구매단 유치

가. 교포무역인 모국상품 구매단 유치: 5회

해당지역	구매단 인원수	방문예정시기
싱가폴	10명 내외	10월경
로스앤젤레스	20명 내외	9월경
뉴욕	40명 내외	10월경
토론토	10명 내외	9월경
동경	30명 내외	10월경

*'88년도 교포무역인 구매단 유치 3회
-실적(계약: 미 \$ 158,985천, 상담추진: 미 \$ 120,545천)

나. 일본 백화점 및 슈퍼마켓 용품 구매단 유치: 2회

- 시기: 3/4 및 4/4분기 각 1회
- 구매단 구성: 백화점 및 슈퍼마켓 용품 유력수입상 10명 내외

5. 기타 수출촉진 지원사업

사업명	하반기 추진계획
• 해외 유력 바이어 방한 유치	• 목표: 1,200명 • 무역관을 통한 유력 바이어의 적극 유치 및 국내업체와의 상담 주선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불황 타개 지원
•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워크 샷 개최	• 목표: 3회 • 유망수출상품에 대한 유력 바이어

사업명	하반기 추진계획
• 일본 전문수입상 초청 워크 샷 개최	를 초청하여 국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현지 시장동향 및 유통구조, 대한민국 거래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워크 샷 개최 • 시기: 4/4분기 • 개최지: 서울 및 각 지방특화산지 • 대상품목: 귀금속, 보석가공(이리), 자동차부품(서울, 광주)
• 해외시장 개척 성공·실패사례집 발간 및 설명회개최	• 시기: 4/4분기 • 연중 무역관, 국내업체 등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연말경에 사례집의 자료발간 및 설명회개최를 통해 업계의 해외 마케팅 능력 제고 및 실패요인의 사전제거에 기여
• 해외 시장개척자금 융자 추천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소요자금을 관련은행에 추천 • 자금종류 및 조건 -대일 시장개척자금(연리 5%, 한도액: 5억원) -해외 시장개척자금(일반대출금리, 한도액: 2천만원)
• 해외우수상품 견본 수집 및 대여	• 목표: 견본수집(135점), 견본대여(400점) • 해외 우수상품의 견본수집 및 대여를 통한 수출유망상품 개발지원
• 중소기업 카탈로그 수집 및 배포	• 실시시기: 11월 중 • 국내 중소기업 수출유망상품에 대한 해외홍보 및 거래기회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카탈로그를 수집하여 해외 전무역관에 무료로 배포

무역어음제도 시행계획

재무부에서는 수출업체의 생산 제조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금융제도와는 별도로 선적전 무역어음제도를 '89. 8.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9. 7. 7
재무부장관

다 음

1. 도입 배경

최근 우리경제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노사분규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여 수출업체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출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측면에서 무역업체에서는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 등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당부는 경제 각 부문간의 균형발전과 흑자 구조에서의 안정적인 통화관리 운영을 위해 일종의 정책금융인 무역금융제도를 그간 축소 또는 폐지 해오고 있어 이를 부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무역금융제도는 현행대로 유지시키면서, 이와는 별도로 수출업체가 무역금융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어음제도를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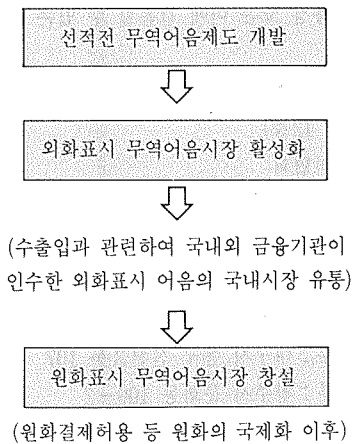
2. 무역어음시장 육성의 기본 방향

가. 통화중립적, 비정책금융적 방법으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나. 단기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부문시장을 개발

- 단기금융시장의 양적확대 및 질적심화 추구
- 투자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 확대

다. 금융여건 및 금융국제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3. 선적전 무역어음제도

〈선적전 무역어음제도의 개요〉

- LC를 받은 수출업체가 발행한 선적전 무역어음을
-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서 인수하여
- 인수된 어음은 중개하는 기관(Dealer)의 할인, 매각을 통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고
- Nego자금으로 선적전 무역어음결제 대금을 상환

가. 무역어음의 발행

- (1) 무역어음 : 신용장의 수익자가 인수기관과의 일정한 약정에 의해 신용장에 명시된 소요자금을 선적전에 조달할 목적으로 그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서 부여 발행하는 기한부 환어음
- (2) 적격발행업체 : LC를 받은 수출업체
- (3) 적격대상거래 : LC방식에 의한 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포함)

(4) 적격어음

- 어음형태 : 환어음(은행도 환어음양식 마련)
 - 발행인 : 수출자
 - 지급인 : 인수기관
- 발행방식 : 하나 또는 수개의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행
- 기 간 : 180일 이내에서 LC 내도일부터 LC 유효기일에 10일을 추가한 기간이내
- 금 액
 - LC금액의 범위이내
 - 최소발행금액 : 500만원 이상

나. 어음의 인수 및 유통

(1) 인수기관 및 중개기관

- 은행,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가 각기 인수 및 중개기관이 됨.
- 인수기관 : 무역어음에 기명납인함으로써 주채무자로서 만기에 무역어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
- 중개기관 : 무역어음의 할인 및 매매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2) 인수 및 사후관리

- 수출실적,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인수하되
- 인수약정에 따라 채권확보 및 사후관리
-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원강화를 위

공지사항

해 인수시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3) 인수 수수료: 연 1.5% 이내에서 인수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4) 적용 금리: 시장실세금리

다. 어음의 만기결제

(1) Nego자금으로 어음결제대금 상환

- 무역어음의 발행인은 수출상품 선적후 발행한 수출회환어음을 당해 무역어음의 인수기관에 매입(Negotiation) 또는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고
- 인수기관은 수출회환어음의 Nego 대전으로 무역어음 결제에 사용.

전자제품수출 추천요령 공고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103호

수출입 공고(상공부 고시 제89-18호) 제8조 (추천요령의 공고 등)에 의한 본회의 전자제품 수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9. 7. 1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다 음

1.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기준

H·S	추천대상품목 및 지역	추천 기준
8516 50	마이크로웨이브오븐 (미국, EC, 일본, 홍콩, 싱가포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지역으로 수출되는 것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일정가격 이상인 경우에 추천 • EC: 자율규제 물량 범위내 추천
8519 21 29 39 99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CDP) (EC지역으로 수출되는 것에 한함)	
8521 10 90	녹화재생기(VTR) (미국, EC지역으로 수출되는 것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가격 이상

H·S	추천대상품목 및 지역	추천 기준	
8523 1320	비디오 녹화용 테이프 (EC지역으로 수출되는 것에 한함)	인 경우에 추천	
8527 11 19 21 29 31 32 39 90	RADIO (EC지역으로 수출되는 것에 한함)		
8528 10	컬러 텔레비전 수상기 (미국, EC지역으로 수출되는 것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일정가격 이상인 경우에 추천 • 영국: 자율규제 물량 범위내 추천 • 자율규제 물량 범위내 추천
8540 1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천연색) (EC지역으로 수출되는 것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규제 물량 범위내 추천

• 추천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 및 지역의 추천기준은 본회의 별도 요령에 의한다.

2. 세부추천요령

본회에서 정하는 별도요령에 의한다.

3. 처리기한: 1 일내

4. 구비서류

가. 수출허가(승인) 신청서 6부

나. 수출신용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추천장소

가.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전자회관 12층)

나. 한국무역협회

• 부산지부: 부산시 중구 중앙로 4 가 37-7

• 광주지부: 광주시 동구 금남로 3 가 1-11

• 전주지부: 전주시 경원동 1 가 104-32

• 대전지부: 대전시 중구 은행동 48-1

• 대구지부: 대구시 동구 신천 3 동 107

• 청주지부: 청주시 문화동 109-2

• 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신월동 97-6

부 칙

이 요령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